2010. 2. 3. (수)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목　　차】

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1. 15.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0. 1. 1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27.

마. 의안번호 : 제2010 - 1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나.「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제13조의4에서 제1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다.「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권 연령에 맞게 하향 조정함(안 제2조).

○ 감사청구인 연령 조정 : 20세 이상 → 19세 이상

4. 검토의견 요지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권 연령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록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1. 15.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0. 1. 1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27.

마. 의안번호 : 제2010 - 2호

2.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세 세목 중 보통세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목적세 중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3조).

나. 종전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 안 제

19조의2 신설,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1조의2 신설).

다.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신설함(안 제2장제1절의2 신설(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

라.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2장제5절 삭제(제42조부터 제52조까지)).

마.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합되는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3장제2절 삭제(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4. 검토의견 요지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한편,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록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1. 15.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0. 1. 1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27.

마. 의안번호 : 제2010 - 3호

2. 개정이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 지방세법 :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 감면조례 : 도시계획세 면제

나.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5 신설).

-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을 정비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사업소세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4. 검토의견 요지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되는 지방세감면 표준안의 범위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록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